

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5월 13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데이터센터는 최근 그 개소 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교통유발계수가 없어 지자체별로 업무시설 및 방송통신시설 중 전신전화국 등 서로 다른 계수를 적용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 중으로 데이터센터의 교통유발량을 고려한 적정 교통유발계수를 신설함으로써 데이터센터에 대하여 합리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

2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

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
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개 정 안	수 정 안	사 유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라. 보내실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정부세종청사 6동 국
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
(전화 044-201-3807, 팩스 044-201-5581)

3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,
정보마당-법령정보-입법예고)를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로
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